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033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주석

변론 종결2021. 3. 25.

판결 선고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3. 접수 제1186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과 C의 관계

- 1) D은 2006. 2.경 C와 혼인하였다가 2014. 12.경 이혼을 하였으나 2016. 말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 2) D은 신용불량자이므로 2018. 5. 8.경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 명의의 은행계좌와 C의 인감도장을 빌려 사용하였다.
- 3) D은 C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도·소매거래 및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 한편 C는 2018. 5. 16.경부터 2020. 1.경까지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D의 관계

- 1) D은 C 명의의 E을 운영하기 훨씬 이전인 2017.경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약 한달 반 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한 적이 있었다.
- 2) E은 2018. 10.경 주식회사 G와 사이에 H 오방난로 1만개를 2억 3,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G에 지급할) 오방난로 대금 중 선금금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E 대표 C는 원고에게 2018. 12. 15.까지 투자원금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고 2019. 1. 15.까지 수익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3) D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C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C는 D과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D은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보여주거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C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 4) 원고는 당시 D이 신용불량으로 배우자인 C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C의 참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사실을

확인하거나 C가 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이후 원고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10. 11. 2,5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같은 해 11. 12. 5,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8. 12. 3. 1,000만 원을, 같은 달 4.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및 공정증서 작성

1) C는 2019. 3. 11.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던 D의 요청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이 2019. 4. 18.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 C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2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C는 2018. 12. 15.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1억 2,500만 원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2018. 12. 3. 1,000만 원, 같은 달 4.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C는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2019. 3. 1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 채무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 1)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 2) C가 2019.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특히 C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3)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배우자인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을 빌려 주었고, D이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실, D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C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C가 운영하던 음식점(F) 앞에 오방난로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E 사무실에서 택배작업을 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부터 D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은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D이 신용불량으로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사실을 확인하거나 C가 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당시 C가 E
사무실의 길 건너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나 제약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D이 C의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위

투자약정서에 첨부된 주식회사 G와의 상품공급계약서에는 E 대표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억 2,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 근거자료인 위 상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9. 2.경 C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7호증의 문자메시지 이외에 (C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허락한) 2019. 4. 18.까지 C에게 추가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에 반해 원고는 D에게 수회 투자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던 점, ⑤ D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 C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E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C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될 무렵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 사무실에서 택배작업을 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C가 음식점 운영이 아니라 D이 실제 업무를 보던 E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한편 원고는 C가 E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라거나 C가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는 등의 사정만으로 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원고가 C를 E의 영업주라고 오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박희근

별지